

미국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도입연기와 시사점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주임연구원 이승훈
(T. 570-4491, sky@kisdi.re.kr)

1. 개요

미국에서 번호이동성은 1984년 AT&T 분할과 함께 착신과금 서비스인 800서비스의 번호이동성 도입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도입되었다. 1992년 착신과금 서비스 시장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허용되었다. 신규 사업자들은 기존 가입자들이 사업자를 변경할 때, 번호변경으로 발생하는 불편으로 인해 신규 사업자로의 가입 전환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번호이동성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에 FCC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1993년에 최초로 번호이동성이 미국에서 착신과금서비스에 대해서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1996년 통신법 제251조 (b)에서 모든 시내전화사업자에게 번호이동성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제251조 (e)에서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경쟁중립(competitive neutrality)의 원칙에 따라 번호이동성 제공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은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1997년 3월에 1999년 6월 30일까지 100개 대도시에 도입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을 도입할 당시에 이동전화 사업자는 번호이동성 구현을 위해 기술표준과 프로토콜 등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였다. 또한, 사업자들은 번호이동 가입자가 자신의 서비스 지역을 벗어나 로밍을 제공받는 동안에 호를 송수신 할 수 있는 망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설비를 구축하는데 기술적 장애에 직면하였다. 1997년 11월에 CTIA(Cellula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는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의 도입시기를 1999년 6월 30일에서 2000년 3월 31일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998년 9월 1일에 FCC는 당초 제공시기보다 9개월 연장해서 2000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이후 1999년에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의 도입시기는 추가적으로 PCS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요건 기간과 망 확대의 유연성 제공을 위해 2002년 11월까지 제공시기를 연기하였다. 다시 2002년 7월 16일에 FCC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공시기를 2002년 11월에서 2003년 11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다음은 이동전화 번호이동

성 연기의 배경 및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도입연기 배경

미국의 이동전화 사업자인 Verizon Wireless는 FCC에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도입을 항구히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FCC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도입시기를 2002년 11월에서 2003년 11월로 1년 더 연장함으로써 인력 양성, 비기술적인 문제, 공공의 안전문제 등을 포함해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구현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FCC는 이번 연장으로 번호이동성 구현과 동시에 1,000개의 번호블록(thousands-block)을 이동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망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FCC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이 번호풀(number pooling)제도¹⁾를 도입하는 최종시한이 2002년 11월 24일까지 임을 강조하였다.

FCC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을 도입함으로써 요금인하, 품질개선,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등의 경쟁효과와 이용자의 편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FCC는 1년 이상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도입시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업자는 이 일정에 따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의 도입연기에 앞서 검토한 주요사항으로 첫째는, 번호보존(number conservation)이다. 초기에 번호이동성은 번호풀제도 시행에 앞서 필요한 조건이라고 간주되었으나, 현재는 번호풀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동전화사업자의 번호풀제도에 도입의 의무는 번호이동성과 함께 연기되지 않고 예정대로 지켜져야 한다.

둘째는 유선/무선 경쟁 측면으로 유선/무선의 대체가 3%정도 나타나고 있으며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부분적이지만 무선의 대체로 인해 장거리 시장에서 매출액의 지속적인 감소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번호이동성이 유선/무선 경쟁에 필수적인 요소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는 무선/유선 경쟁 측면으로 1999년에 도입시기 연기의 배경에는 번호이동성이 도입되지 않아도 이동전화시장의 경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번호이동성이 이러한

1) FCC는 번호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미번호계획 내에서 번호자원의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여러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FCC는 10,000개의 번호블록 할당보다 1,000개의 번호블록을 할당하는 체계(thousands-block number pooling)를 도입하였다. FCC는 이동통신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는 이 체계를 따라야 하고, 상위 100개의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이동통신사업자는 2002년 11월 24일까지 이러한 번호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1999년 도입연기의 결정 이후, 사실상 경쟁 환경은 개선되어 가입자가 증가하고, 요금은 하락하고, 서비스 제공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가입전환율과 소규모 후발사업자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99년에 도입연기를 결정할 때처럼 현재의 가입전환율이 높다는 것은 번호이동성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사업자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번호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도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소규모 이동전화사업자의 입장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시장점유율이 작은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의 이용자를 끌어오기 위한 도구로 번호이동성 도입에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Leap과 같은 일부 사업자는 도입연기를 반대하였지만 네 개의 소규모 전국 사업자(Sprint, Nextel, Alltel, Voicestream)는 도입연기를 지지하였다. 이 사업자들이 도입연기를 지지하는 것은 현재의 재원을 수익성이 높은 사업영역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기술적 고려사항으로 기술적인 문제도 도입연기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번호폴제도와 번호이동성 도입과 관련해서 긴급전화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일정정도 도입연기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번호폴제도가 통신망에 미치는 영향이나 번호이동성을 도입 설비가 예상되는 번호이동 수요의 충족여부가 아직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FCC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의 도입 시기를 1년 더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3.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에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도입이 다시 1년 연기되었지만 번호이동성 도입으로 인해 요금 인하, 품질개선,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의 제공 등 경쟁효과와 이용자 편익이 분명히 발생함으로써 도입연기를 결정하기에 앞서 그 근거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번호의 효율적 사용, 시장의 경쟁상황, 기술적인 문제 등에 있어 연기의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일반적으로 번호이동성은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이용자의 번호변경으로 발생하는 불편으로 인해 가입 전환이 어려움으로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을 위해서 규제기관에 요청하여 도입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규 사업자도 시장에 진입한 후 일정시점이 지나서는 번호이동성 도입에 시장 진입 초기처럼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는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두 번의 도입연기를 한 사실과 최근 미국 국내의 자금시장이 불안정한 것이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의 도입을 연기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

로 보인다. 넷째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의 도입은 경쟁효과와 이용자의 편익으로 인해 항구적으로 도입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상황과 기술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입시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염용섭 외,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의 타당성 조사 및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4
- [2]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FCC), “FCC Extends Wireless Local Number Portability Deadline by 1 Year to Number 24, 2003,” 2002. 7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에 대한 Oftel의 가이드라인

공정경쟁연구실 주임연구원 오기석
(T. 570-4243, ksoh@kisdi.re.kr)

1. 개 요

EC(European Commission)의 4개의 신규 통신관련 지침서가 2002년 4월 24일부터 발효되었으며, 회원국들은 2003년 7월 25일까지 이 신규 지침서의 내용을 이행해야만 한다.¹⁾ 신규 지침서에는 규제가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통신시장에 대한 경쟁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Oftel이 유효경쟁(effective competition)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별 경쟁평가(market review)를 이미 수행해 오고 있었다. Oftel은 발효된 EC의 신규 지침서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2000년 8월에 발표한 “유효경쟁평가 가이드라인(Effective Competition Review Guidelines)”을 대체하는 가이드라인을 2002년 8월 5일에 발표하였다. 금번 Oftel의 가이드라인에서는 EC 규정에 따른 시장평가(market reviews) 수행시 시장내에 SMP(Significant Market Power) 사업자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할 기준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4개의 신규 지침서는 프레임워크 지침서(Framework Directive), 접속 및 상호접속 지침서(Access & Interconnection Directive), 인가 지침서(Authorisation Directive), 보편적서비스 지침서(Universal Service Directive) 임